

공동주택(아파트등)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!

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

「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」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인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.



1. 점검대상 및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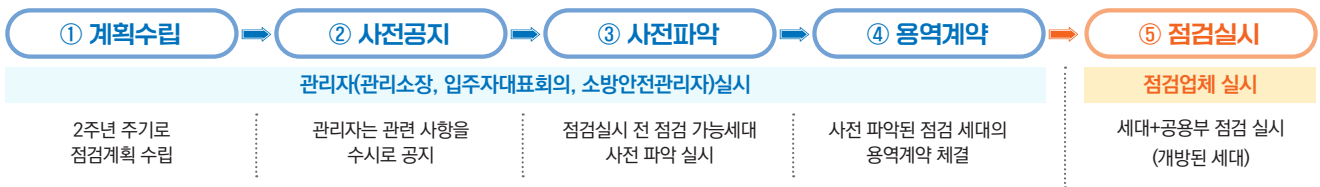
- 대 상 아파트 등 (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)
- 시 기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부터 **2년마다**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

예시 2017년 6월 30일 사용승인, 종합점검 대상 A아파트

시기	종류	점검비율(계획)	시기	종류	점검비율(계획)
① '23년 6월	종합점검	30% 이상	② '23년 12월	작동점검	30% 이상
③ '24년 6월	종합점검	30% 이상	④ '24년 12월	작동점검	잔여 세대

2. 세대점검 실시절차

- 소방시설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



- 입주인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

- 점검** ① 입주인 등 '소방시설 외관점검표' 수령(관리사무소) ▶ ② 점검 및 작성 ▶ ③ 관리사무소에 제출
- 보관** ① '소방시설 외관점검표'(점검자 작성) 및 ② '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'(관리자 작성) 2년간 보관



3. 점검해야 할 세대내 소방시설

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자료실 내 「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알림

원칙 기간 내 세대점검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미점검 세대에 대한 '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' 제출 시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

'24.12.1. ~ '25.11.30.

- 이행기간 20일 이내 부여(원칙) 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와 협의후 이행기간 부여가능
- 제출방법 자체점검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

1 이행 완료

이행기간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경우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작성 제출 ▶ **과태료 미부과**

2 이행 미완료

이행기간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**과태료(300만원) 부과**